



열린장관실 모바일 English 사이트맵 나의메뉴

	정보공개	국민소통	법령/정책	발행물	알림/홍보	기관소개	Q	
--	------	------	-------	-----	-------	------	---	--

일반민원(질의응답)

환경부 > 국민소통 > 민원신청 > 일반민원(질의응답)

국민소통

클린신고센터

부조리·공익침해·불친절신고
밀렵·밀거래신고
예산낭비신고
환경신문고
공직비리신고
안전신고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공공분야 갑질피해 익명신고

민원신청

일반민원(질의응답)

자주하는 질문
서식민원
서식자료

규제개혁

국민참여

장관과의 대화
국민제안
자유발언대
청찬합시다
설문조사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헬프데스크

시민소통 헬프데스크
신규정책 · 사업 국민제안
연구개발사업 민간공모
자료실

110화상/수화/채팅상담

국민생각함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생각의 완성

일반민원 신청	일반민원 조회	유사민원 공개
---------	---------	---------

일반민원(질의응답)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 합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연락처 안내>

민원신청, 로그인 등 시스템(오류)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1600-8172

환경부 민원(업무)관련 문의 : 환경부 민원실1577-8866

환경부 부서별 전화번호안내 바로가기

일일 가동시간에 대한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09.01.23 11:45:46	처리상태	완료
추운 동절기를 맞이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주문량에 따라 일일 가동시간이 1시간일때도 있고 5시간 일때도 있고 아주 뜸하게 8시간을 넘길때도 있습니다. 필증상에는 8시간/일 로 허가를 받았는데, 저희는 평균가동시간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이경우 최대 가동시간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가동시간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배출량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요

처리 결과

-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정 시간만 가동한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써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일평균조업시간의 변경이 없다면 최대 가동시간이 변경되었다 하여도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가동시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가동시간의 변경으로 오염물질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시 재계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확인

| 최종수정일 : 2018-10-16 14:11

외청 및 소속기관

관련기관

다른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서비스 바로가기

홈페이지 이용안내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저작권정책 | 환경행정서비스현장 | 홈페이지개선의견 | 뷰어다운로드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고객지원센터(민원실) : 1577-8866**, 홈페이지 시스템문의 : 044-201-6481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하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 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Ministry of Environment. All Rights Reserved.